



11.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하는 기관은?  
 ① 국민건강협회  
 ② 국민건강진흥원  
 ③ 국민건강증진협회  
 ④ 한국건강증진개발원
12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관계법령상 치과기공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 
 ①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다.  
 ②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제작등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.  
 ③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.  
 ④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
13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상 반드시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 
 ①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 하는 경우  
 ② 「혈액관리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 
 ③ 「모자보건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 
 ④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14. 다음 중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옳은 것은?  
 ①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
 ②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
 ③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
 ④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
15. 「보건의료기본법」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 
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 
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 
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·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·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 
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16. 다음 중 「정신보건법」상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?  
 ① 정신보건간호사  
 ② 정신보건상담치료사  
 ③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
 ④ 정신보건사회복지사
17. 「혈액관리법」에 따라 혈액원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여 폐기처분하였다면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?  
 ① 시·도지사  
 ② 보건복지부장관  
 ③ 대한적십자사총재  
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
18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 의료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 중 미수금의 대지급(代支給)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하는가?  
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
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
 ③ 지방자치단체  
 ④ 보건복지부
19. 병원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?  
 ① 관할 보건소장  
 ② 관할 경찰서장  
 ③ 관할 시·도지사  
 ④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
20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상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 
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·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  
 ②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 
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·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 
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